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407-0880003
신청일	2024-07-24 10:36:31
신청인 구분	개인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휴대전화
진행결과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보안 설정	아니요

민원 신청 내용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물가변동시 노임단가 관련 문의
내용	<p>안녕하세요.</p> <p>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6조에서 감리원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노임단가로 적용하고 1일 8시간, 1개월을 22일로 계상하라고 나와 있습니다.</p> <p>2023년7월20일 조달청에서 공표한 엔지니어링 월평균 근무일수 변경에 따른 등락률 산정안내가 있는데 전기감리 물가 변동시 등락률 산정을 위하여 20.6일을 적용하는게 맞는지 22일을 적용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p>
첨부 파일	<p>붙임 : 전기기술인협회 공지사항, 전기기술인협회 답변, 전력기술관리법유권 해석, 조달청공표자료</p> <p>전기기술인협회 답변.jpg 전기기술인협회 홈페이지.jpg 전력기술관리법유권 해석.jpg 조달청 공표자료.jpg</p>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 전력정책관 전력산업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407-0916013
접수일	2024-07-24 11:10:17
담당자(연락처)	유진석 (044-203-3896)
처리에정일	2024-08-12 23:59:59

답변 내용

통지일 처리결과 (답변내용)

2024-07-25 09:50:49

1.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1AA-2407-0880003)을 제출하셨습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감리원 노임단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되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우리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6조에서 감리원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노임단가(특급, 고급, 중급, 초급)로 적용하고, 1일 8시간, 1개월을 22일로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보고서」의 월 근무일수를 기존 1개월 22일에서 월 평균 근무일수(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 / 12개월)로 변경하였고, 월평균 근무일수를 20.6일로 공포함에 따라,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의 1개월 기준(22일)과 달리 적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 다만, 정액적산 방식 현장의 1개월 기준 변경(22일→20.6일)은 감리원의 직접인건비 산출금액 외에도 현장 안전과 관련한 감리원의 실 배치일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감리원 배치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동 운영요령에서는 1개월의 기준을 22일로 정하고 있어, 이를 따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유진석 주무관(044-203-3896)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택에 언제나 행복과 건강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파일 만족도 결과

질문	답변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이 해결되었습니까?	해결
한마디 더	